
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”을 “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”로 한다.

제32조제4항 중 “의하되,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”를 “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는 학칙으로 정하되, 20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승인한 자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
2.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1조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)	제11조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)	제11조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)	제11조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)	제11조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)
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<u>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</u>	①----- ----- <u>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 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----- -----.</u>	①----- ----- <u>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 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----- -----.</u>	①----- ----- <u>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 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----- -----.</u>	①----- ----- <u>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 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----- -----.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)	제32조(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)	제32조(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)	제32조(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)	제32조(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의 학급편성(영재학급을 둔 학 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 다)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<u>의하 되,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 로 한다.</u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한 다.</u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한 다.</u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한 다.</u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한 다.</u>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 는 20인 이하로 한다.	⑦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칙으로 정하되, 20인 이 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승인	⑦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칙으로 정하되, 20인 이 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승인	⑦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칙으로 정하되, 20인 이 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승인	⑦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칙으로 정하되, 20인 이 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승인

⑧ (생 략)	<u>한 자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</u> <u>2.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가 있는 경우</u> 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6708 (044) 203 - 6710